

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54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10

다. 상 정· 의 결 일 자 : 1999. 7. 21

총무위원회 상정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0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·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규제의 완화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0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사유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 삭제 (안 제8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·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
- 0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·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7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